

환경조정분쟁에 의한 건설소음·진동 피해분쟁조정 사례분석

A Case Study of Dispute Mediation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for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정은정† · 김재수*

Jung Eun-Jung, Kim Jae-Soo

Key Words : 건설소음·진동(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환경오염피해(Environmental Damages), 환경분쟁조정위원회(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BSTRACT

Recently people have come to demand more pleasant environments as the quality and right of life have been improved. Along with industrial development, the tendency is causing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s. Of many kind of environmental damages, noise and vibration pollution rising at construction fields are particularly the most common subjects of public grievance. Thu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Environm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1991, purposing to utilize fully the promptness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to resolve environmental damage disputes promptly and fairly by interfering in them actively. With the prompt and fair dispute mediations of the committee, people came to be able to get fair and prompt remedies for damages in their health and fortune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by analyzing dispute mediation case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we will suggests basic material on which efficient actions can be takes for public grievances happening in the future

1. 서론

최근 삶의 질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더불어 산업발달에 의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 공해는 환경피해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확실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분쟁 중 건설소음·진동관련 피해분쟁 조정사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민원 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사례중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설소음·진동의 영향, 민원신청내용 및 사건처리 결과비교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해분쟁조정사례에 대한 자료의 범위는 환경분쟁사건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던 '1993년에서부터' 2005년 말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1413건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 중 1216건의 소음·진동 관련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자진철회 및 지방이송 등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사건은 본 자료의 처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교차분석 등을 사용

†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건축음향연구실
E-mail : dmswjdo@nate.com
Tel : (063)857-6712

*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표화 시켰다.

3. 분석 및 고찰

3.1 피해분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비교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초반인 1993년부터 2005년 말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년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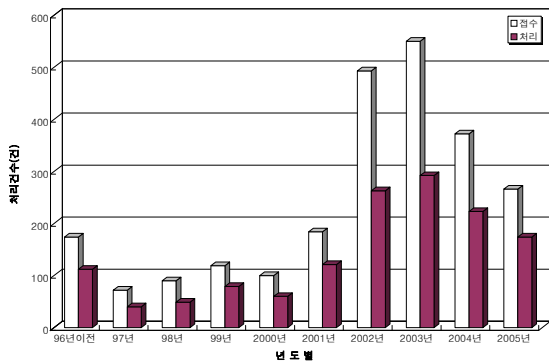


그림 1. 년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비교

* 접수건수는 전년이월을 포함한 수임

그림 1.에서 보면 전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건수를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특히 2002년 접수건수가 이전 10년간의 신청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는데, 이는 국민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증감소음처립 그 동안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영역에까지 조정범위를 확대한 결과이다. 2003년 6월부터 1억 원 이하의 재정사건을 1개 사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2 피해원인별 조정신청 현황분석

'1993~' 2005년의 13년 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1413건의 분쟁조정에 대한 피해원인별 신청현황을 파악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피해원인별 조정신청 현황분석

구분 년도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계	1409	1215	86.2	116	8.2	52	3.7	9	0.6	17	1.2
'95년 이전	73	37	50.7	14	18.2	15	20.5	7	9.6	-	-
'96	35	33	94.3	1	2.9	-	-	1	2.9	-	-
'97	40	35	87.5	4	10.0	1	2.5	-	-	-	-
'98	49	41	83.7	7	14.3	1	2.0	-	-	-	-
'99	79	67	84.8	8	10.4	4	5.1	-	-	-	-
'00	60	49	81.7	7	11.7	4	6.7	-	-	-	-
'01	121	103	85.1	11	9.1	7	5.8	-	-	-	-
'02	263	229	87.1	26	9.9	4	1.5	-	-	4	1.8
'03	292	264	90.4	19	6.5	8	2.7	-	-	1	0.4
'04	223	206	92.4	8	3.6	3	1.3	1	0.5	5	2.2
'05	174	151	86.8	11	6.3	5	2.9	-	-	7	3.1

표 1.에서 보면 소음·진동 분야가 1216건(86.1%), 대기오염이 116건(8.2%), 수질오염이 55건(3.9%), 해양오염이 9건(0.6%), 기타 17건(1.2%)순으로 피해원인별 분쟁조정 신청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타 분쟁은 일조권분쟁과 새집증후군 분쟁이다. 이런 순서는 소음·진동피해는 오염발생과 동시에 피해를 체감하여 즉각 반응할 수 있는데 반해 대기·수질 오염사건은 오염발생과 피해인지 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음·진동분야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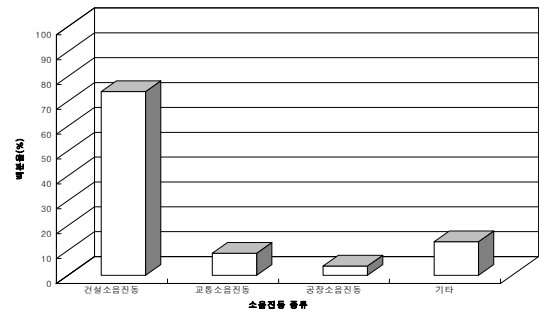


그림 2. 소음·진동분야 중 건설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

그림 2.에서 보면 소음·진동 관련 분쟁조정 신청중에서 건설소음·진동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아파트 층간소음, 기계실 소음 등), 교통소음·진동, 공장소음·진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93년 이후 2005년 말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소음·진동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 관련민원임을 알 수 있다.

3.3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승복률 비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처리결과 중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처리 결과에 대한 승복여부를 파악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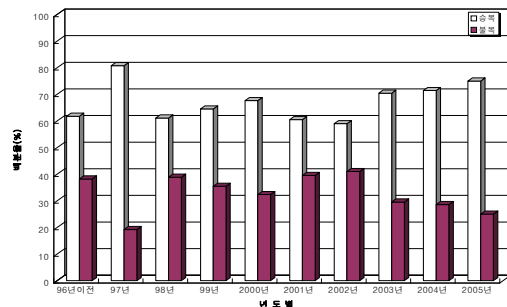


그림 3. 분쟁처리 결과에 대한 승복률 비교

그림 3.에서 보면 건설소음·진동관련 조정 처리 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승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7년의 승복률은 80%에 육박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6년동안 (' 2000~2005년)의 승

복률은 평균 67.3%로 나타나 분쟁조정제도 도입 초기인 '1996년 이전의 승복률 평균인 61.8%보다 높아져 당사자간의 만족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불복률은 2001년, 2002년에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불복률이 40%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자간의 불복률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민원 발생시 피해자의 경우는 배상결정액에 대한 불만 및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불만이며, 가해자의 경우는 배상결정액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불만과 배상책임이 가해자에게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불만족 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민원인 피해요구액과 배상결정액(배상율) 수준

지난 13년 동안의 분쟁조정 처리결과 중 건설소음진동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에 대하여 배상액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지적된 주민의 평균 피해보상 요구액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균 피해배상액의 차이를 파악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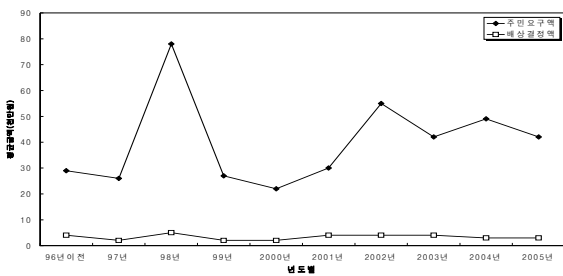


그림 4. 년도별 평균 피해요구액과 배상결정액의 비교

그림 4.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3년, 2004년에 낮아진 것은 피해분쟁 결과를 많이 접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요구액을 책정한 데에서 평균요구액이 2002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주민요구액에 비해 배상결정액의 수준은 지난 13년 동안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3년 동안의 전체 주민의 피해요구액과 배상결정액의 수준을 년도별로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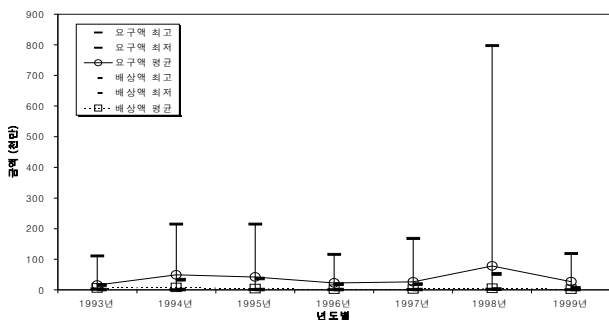


그림 5. 과거 6년 동안의 주민피해 요구액과 배상액 수준

그림 5, 그림 6.에서 보면 1998년을 제외한 과거 6년 ('1993~' 2000년)의 주민피해 요구액은 일정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1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는 피해보상 요구액이 최고 100억대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가장 많은 피해배상 요구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배상액 결정은 전체적으로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주민피해 요구액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배상결정액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3년 동안의(2003년~2005년) 요구액과 배상액은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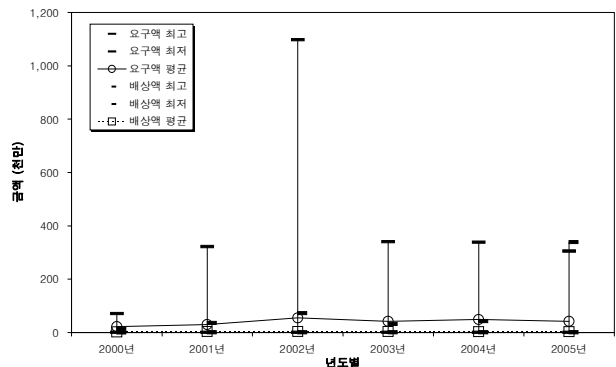


그림 6. 최근 6년 동안의 주민피해 요구액과 배상액 수준

따라서 이러한 분쟁처리 결과를 토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결정 수준을 피해자인 민원인이 요구하는 피해배상액과 비교해 볼 때 건설소음진동관련 피해분쟁 조정건수에 대한 평균 배상률은 10.9% 정도의 배상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처리결과와 배상율과의 관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처리결과와 배상율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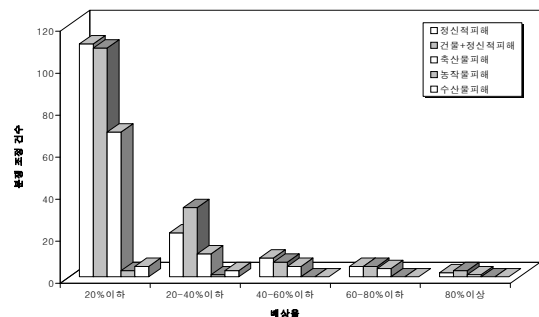


그림 7.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처리결과와 배상율과의 관계

그림 7.에서 보면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건물+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축

산물 피해” 등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배상율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20% 이하”가 피해내용별 분쟁조정에 대한 보편적인 배상율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40% 이하”의 배상율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3년동안의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결과 중에서 “정신적 피해”, “건물+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면 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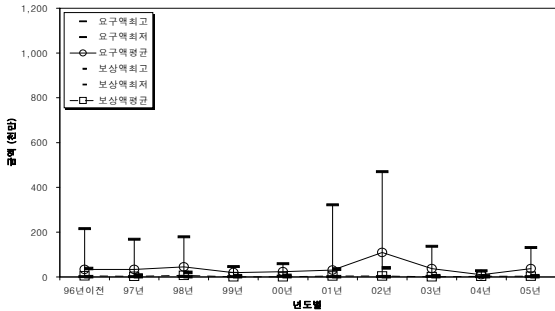


그림 8. 건물+정신적 피해에 대한 주민요구액과 배상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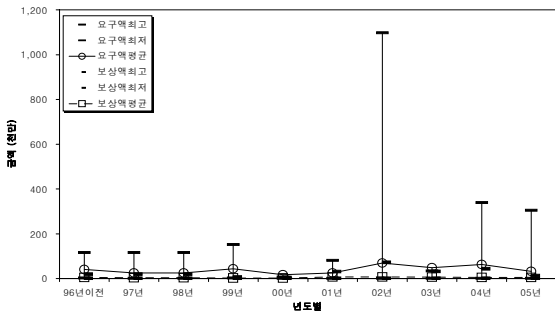


그림 9. 정신적 피해에 대한 주민요구액과 배상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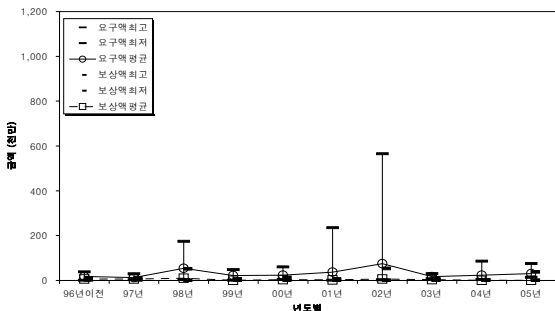


그림 10. 축산물 피해에 대한 주민요구액과 배상액 수준

그림 8, 그림 9, 그림 10.에서 보면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결과 중 “건물+정신적 피해”와 “축산물 피해”의 경우 주민의 피해 요구액은 일정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1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다 2003년, 2004년에는 과거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정신적 피해”는 2005년에 증가하였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결정 수준은 13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2002년 요구액이 급격히 높아

졌고 2002년을 제외한 지난 11년('93~03년)에 비해 2004년과 2005년의 요구액은 증가하였으나 배상액결정수준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산물 피해”에 대한 주민요구액과 배상액 수준을 살펴보면 최근 4년('2000~2005년) 동안 피해 요구액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 “축산물 피해”에 대한 민원 중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액 수준은 13년동안 매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 중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결과는 평균 82.8%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들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의 피해원인은 소음·진동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지적률이 7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건설소음·진동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승복률은 꾸준한 증가추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불복률은 2001년, 2002년에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불복률이 40%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 피해배상율은 10.9%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원의 피해요구액은 2001년과 2002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과거의 수준을 유지함을 볼 수 있으며 배상율 수준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대상 가축은 돼지, 젓소, 닭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들어 개, 소, 사슴, 토끼, 타조, 미꾸라지 등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가축피해에 대한 피해 요구액은 2001년, 2002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3년, 2004년, 2005년에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배상수준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향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관련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원인 양측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검토기준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재수 ;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건설소음·진동 이론과 실무” , 서우출판사, 2003
- (2) 김재수의 5인 ; “건설소음·진동” , 서우출판사, 2001.9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집 (‘93~2004)
- (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편람” , 1995.12
- (5) 한국표준연구소, “소음환경 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 1982
- (6) 환경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1997.12
- (7) 환경부,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1996.12